

"주 최대 52시간 시행,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수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한국
중견기업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소상공인연합회 귀하

(경유)

제목 '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홍보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②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여 ③고용을 유지하고, ④그 결과 임금이 감소하게 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부(50% 이내)를 지원(⑤지원금은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 자세한 지원내용은 첨부된 리플렛 참조
4.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사를 지원하기 위해 '20.7월에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으로 '21.6.30까지 공모사업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현행 규정 상 '21.7.1부터는 사업 참여 불가)
* '21.6.30.까지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참여·승인되면, '21.12.31.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 가능 (단, 지원금은 '21년에 신청하여 전액 수령하여야 하며, '22년에는 지원 불가)
5. 이에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 기관에서 관리하는 회원사 등에 대한 사업 홍보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탁일송 주무관(044-202-759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 '21년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안내 리플렛 1부.

나.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사업 담당자 연락처 1부. 끝.

